대한민국 대전환 대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 보도 일시 2022. 4. 28.(목) 14:00 배포 일시 2022. 4. 28.(목) 07:30 책임자 과 장 윤동욱 (02-2100-3071) 담당 부서 개인정보정책국 데이터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장동철 (02-2100-3076)

가명정보 처리, 더 쉽고 명확해진다

- 개인정보위, 현장의견 반영한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 개정 -

- □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윤종인, 이하 '개인정보위')는 가명정보* 활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산업현장,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「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(이하 '가이드라인')을 개정하였다.
 - * **가명정보**: 개인정보의 활용 가능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정보 일부의 삭제·대체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
- □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가명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**불확실성**을 해소하고 정보보유기관의 적극적인 가명정보 활용을 유도하기 위해.
 - 가명정보 처리에 **필요한 절차**를 **구체화**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**사례**와 **설명**을 대폭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.

<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주요 개정내용 >



- ①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와 관련하여, 가명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전 절차인 '처리대상의 위험성 검토'와 '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 정의'의 방법을 적용사례, 점검표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.
 - 가명처리 후 이루어지는 '**가명처리 적정성 검토**'의 결과가 '**부적정**'인 경우에 필요한 **재점검 절차**(목적 재설정, 추가 가명처리 등) 등도 **세분화**하였다.

<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절차 및 방법 개정내용 >

단계	검토내용	부적정 시 조치사항	
① 필요서류	사전준비 단계에서 필요서류가 법· 제도 목적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	해당 자료 보완 작성 등 재점검	
	△ 가명정보 이용 제공 신청서 △ 가명	경정보 안전조치 의무이행 확약서 등	
② 목적 적합성	보호법에서 정한 목적 중에서 가명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였는지 검토	목적 구체화 및 재설정	
	△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자료 등		
▼			
③ 위험성 결과 적정성	위험성 검토 점검표 및 결과보고서 기반으로 검토	식별 위험성 재검토, 결과보고서 보완 등	
	△ 개인정보 유형 분류표 △ 활용데이터 요구	수준표 4식별 위험성 검토 결과보고서 등	
▼			
④ 항목별 가명 처리계획의 적정성	항목별 가명처리 방법 및 수준을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 확인	항목별 가명처리계획 보완	
	△ 항목별 가명처리계획 정의표		
▼			
⑤ 가명처리 결과의 적정성	항목별 가명처리계획에 따라 실제 가명처리가 되었는지 확인	가명처리를 다시 수행하거나 부분적으로 추가 가명처리를 수행	
	· 가명정보 처리 기초자료 명세서 등		
⑥ 목적 달성 가능성	가명처리된 정보가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검토	항목별 가명처리계획 보완, 추가 가명 처리 등	
	· 가명처리 및 결합 목적 증빙자료 등		

- ② 가명정보 결합·반출과 관련하여, 아우터 결합(Outer Join)* 등 결합 후 반출가능한 정보(결합유형)를 시각화하여 명확히 안내하였다.
 - * 결합신청자는 결합결과로서 자신의 정보 중 결합되지 않은 정보의 이용이 가능

< 가명정보 결합 유형별 반출가능 정보(예시) >

결합 유형	결합·반출 대상 정보(빗금 영역)	설명(A결합신청자 기준)
	결합신청자(A) 결합신청자(B)	▶ A정보-B정보-C정보의 교집합
이너 결합		▶ 결합신청자 모두(A-B, A-B-C)가
(INNER JOIN)		공통(결합키)으로 보유한 정보를
	결합신청자(B) 결합신청자(C)	결합하여 반출
	결합신청자(A) 결합신청자(B)	▸ A정보에 B정보·C정보를 결합
아우터 결합		▶ 결합신청자(A)가 제공한 정보를
(OUTER JOIN)		중심으로, 결합된 정보와 A정보의
	결합신청자(B) 결합신청자(C)	결합되지 않은 정보를 반출

- ③ 그 외에 가명정보 처리의 절차별 검토사항, 필요자료 등에 대한 참고 사례를 가상 시나리오에 기반하여 제시하였고,
 - 그간 현장에서 **가명정보 처리 및 결합**과 관련하여 **자주 제기된 질문**에 대한 **답변(FAQ)***도 수록하였다.
 - *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·고유식별정보의 가명처리 가능여부, 가명정보의 유상 판매 가능 여부 등
- □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"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현장에서 가명정보 제도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추진한 것"이라며.
 - "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국내·외 동향을 반영하여 가명정보 활용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."고 하였다.
- ※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5월 2일 개인정보위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개인정보위 누리집(www.pipc.go.kr): 홈>정책·법령>법령정보>지침·가이드라인
- 가명정보 결합종합지원시스템(link.privacy.go.kr): 홈>열린광장>자료실



